

범죄증거자료 제보시 범죄신고보상금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박형식*

요 약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사실의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증거제보에는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재의 사법제도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수사능력만으로는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사실의 입증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증거제보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증거확보를 위한 수단으로서 스마트폰,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에 녹화된 범죄증거를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게 범죄신고 보상금의 지급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증거제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보상금의 법제화, 스마트폰 앱 개발, 증거제보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것이다.

A Study on The Measures of Monetary Rewards When Providing The Evidences

Park Hyung Sik*

ABSTRACT

Many of crimes are solved by the report of people. Therefore, countries pay compensation to crime reporter.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compensation is focused on the report of criminal fact and criminals arrest, so that there is no compensation on the providing eviden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dopted the principle of trial by evidence, all the facts are made by the evidence. But it is impossible to obtain all the evidence only by law enforcement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people to report the evidence positively. So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take advantages of smart phones, vehicle black boxes and cctvs. Various incentives such as compensation would be needed to require the evidence of smartphone or black box, CCTV. In order to strengthen evidence report, it will be needed the legislation of crime report compensation, smartphone apps develop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various incentives.

Key words : Evidence, Crime, Monetary Rewards of Crime Report, Smatr phone, Blackbox

접수일(2015년 5월 6일), 게재확정일(2015년 5월 19일)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이 논문은 치안정책연구소의 용역지원으로 수행되었음.

1. 서 론

범죄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국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는 헤아릴 수없이 많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범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보상금지급 체계는 범죄 신고와 범인검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사법제도는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범죄사실과 범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무조건 범죄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직폭력 범죄나 마약범죄, 뇌물수수사건 등과 같이 증거확보가 어려운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능력만으로는 범죄를 구증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약용하는 범죄는 더욱더 지능화되고, 그 숫자도 늘어날 것이 불을 보듯 흰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단지 범죄사실만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거의 전 국민이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차량에도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증거확보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증거가 없어서 일단 큰소리부터 치고 보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는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블랙박스가 늘어나면서 사고 장면이 정확하게 채증이 되어 있어서 잘못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거의 전 국민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스마트 폰의 경우에도 카메라와 녹음장치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채증이 가능하고 심지어 동영상까지도 녹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스마트 폰이나 블랙박스를 통하여 확보한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함으

로써,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제조와 판매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거가 어려운 마약범죄사건,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도 못하고, 범인이 검거되어도 지시를 한 두목을 처벌하기 어려운 조직폭력사건, 주로 현금으로 주고 받기 때문에 혐의입증이 어려운 뇌물수수사건 등의 경우에 효과적인 증거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범죄 신고나 범인검거 뿐만이 아니라 범죄증거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범죄증거자료

2.1.1 범죄증거자료의 개념

증거란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말한다. 증거는 증거방법 또는 증거자료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증거방법이란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를 말한다. 증인,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 증거자료란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한다. 예컨대 증인신문에 의하여 알게 된 증인, 증거물의 조사에 의하여 알게 된 증거물의 성질이 그것이다[1].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범죄증거자료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증거자료의 의미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증인을 신문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증거물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증거자료”의 의미는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수사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1.2 사인이 녹화한 컴퓨터디스크

컴퓨터디스크에 들어 있는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컴퓨터디스크는 그 기체의 매체가 다를 뿐 실질에 있어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디스크는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다. 다만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이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러한 내용의 문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2]

2.1.2.1 녹음·녹화물의 증거가치

스마트폰과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이용한 녹음·녹화는 기록과 재생 능력의 면에서 기계적·과학적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능력을 초월할 뿐 아니라 수록된 음성과 화면은 살아있는 것으로 높은 증거가치를 지닌 과학적 증거자료이다[3]. 현재 스마트폰은 전 국민이 거의 한 대씩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보험료도 할인해 주고 있어서 블랙박스의 판매량이 연간 1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녹음·녹화자료를 잘 활용한다면 수많은 범죄사건을 해결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녹음·녹화한 범죄증거자료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의 피해자가 녹음·녹화한 범죄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의자나 증인은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들을 더 잘 발견하고 수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4]

2.1.2.2 사인이 수집한 녹음·녹화물의 문제점

사인이 수집한 사진, 녹음, 녹화물은 높은 증거가치를 가진 증거자료이지만 촬영자와 녹화자, 편집자의 인위적인 편집의 위험성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진, 녹음, 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가 된다. 특히 사인은 영장 없이 녹음,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영장 없는 녹음, 촬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녹음, 녹화물에 전문법칙이 적용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1.2.3 사진의 증거능력

사진은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렌즈에 비친 대로 필름 또는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이므로 그 과정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신용성과 증거가치가 높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진에 인위적인 오류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진에 있어서도 피사체의 선정이나 촬영조건은 물론 현상과 인화과정에 인위적인 조작의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사본으로서의 사진과 진술의 일부인 사진, 현장사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범죄증거자료 제보의 경우는 사인이 범행상황과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장사진은 사실을 보고한다는 면에서 진술증거와 동일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장사진은 현장검증과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6항에 의하여 촬영자의 진술에 따라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겠다.[5]

2.1.2.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비밀녹음은 위법이고, 그에 따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즉 대법원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위법이므로, 사인이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대화(제3자의 비밀녹음)를 녹음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간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부분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불법 감청한 것으로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고(제3자의 불법감청),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당사자의 비밀녹음) 것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동법 제14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비밀녹음과 불법 감청은 위법이고, 따라서 그 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는 데에 반해 당사자비밀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2.1.2.5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대법원은 유아인 피해자들과의 상담내용을 사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 비디오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진술부분에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비디오테이프는 촬영 대상의 상황과 피촬영자의 동태 및 대화가 녹화된 것으로서 녹음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된다면, 비디오테이프의 촬영·녹음된 내용을 재생기에 의해 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2 범죄신고 보상금제도

2.2.1 범죄신고 보상금제도의 개념

범죄신고 보상금제도는 불법행위나 불공정 행위 등 위·탈법 행위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 신고자가 규정된 보상금(포상금)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범죄신고 보상금제도의 범죄신고 보상금은 규제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정부가 행정력의 미흡으로 인해 모든 대상에 대해 일일이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들에게 규제대상행위의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게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제공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범죄신고 보상금제도는 최근 우리 국민들의 범 경

시풍조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범죄신고 및 고발정신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신고 보상금제는 단순히 범죄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보다는 경찰의 각종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대상자들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내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법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며 지속해야 할 치안정책의 확보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 범죄신고 보상금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2 신고보상금지급의 기준

범죄신고 보상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상을 해주는 대상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보상금액을 정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자와 경찰관서간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의 적정성과 운용상의 적정성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고자의 행위 측면에서 본다면, 신고한 범죄의 경중, 제보한 증거의 증명력, 범죄적발의 난이도, 신고과정의 적극성, 신고내용의 정확성 등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급액수의 측면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수감 정도, 범죄 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2.3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

범죄신고 보상금제도는 범규 준수, 범죄의 감소 등 경찰활동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불신 풍조의 조장,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범죄신고 보상금의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등 다양한 근거규정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감사원이나 경찰청의 보상금이 행정규칙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법률의 근거 없이 신고보상제도가 시행될 경우,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나 예산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것이다[5]. 둘째, 범죄신고 보상금제도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고보상금제도는 신고자의 신고를 그 기반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신고는 보통 파파라치(전문신고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

문신고꾼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반행위 및 당사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파파라치(전문신고꾼)의 등장이다. 현행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의 등장이다. 일반 시민의 참여 속에 각종 사회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신고보상금제도가 위반행위의 걸목을 노린 파파라치 때문에 포상금 독식과 위반자의 반발 등 각종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회의 원동력인 젊은 노동력들이 단기에 돈을 벌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의 파파라치가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6]. 넷째, 국가의 공적 업무를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래 국가가 행정력과 자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시민에게 떠넘김으로써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7].

3. 범죄증거자료 제보환경 분석

최근 들어 범죄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CCTV라고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이나 교통관리 등의 공공의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회사나 가정,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CCTV가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통하여 범인검거와 증거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4천만대에 이르는 스마트폰을 통한 범죄증거자료 확보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720만대 정도가 보급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증거자료 확보 및 제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스마트폰과 블랙박스, CCTV 등에 대한 이용 및 설치현황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3.1 스마트폰의 활용

3.1.1 스마트폰의 개념

스마트폰이란 일반 PC와 같이 범용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모바일 앱을 자유롭게 설치 및 실행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모바일앱이란 스마트폰에 맞춤형 응용소프트웨어로서 게임, 전자책, 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 스토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앱을 구하고, 스마트폰에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특성은 3G, 4G, LTE, Wi-Fi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이용자가 원하는 앱을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모바일앱 이용 동기에 따라 원하는 앱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므로 서비스 이용환경, 플랫폼, 콘텐츠는 기존보다 더욱 이용자 위주로 변화하게 된다[8]. 스마트폰의 특성은 플랫폼적 기능, 콘텐츠적 기능, 인터페이스적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9].

3.1.2 스마트폰 가입자 현황

국내에서 스마트폰에 의한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09년 말 출시된 애플의 아이폰이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하반기 동안 휴대폰사업자의 스마트폰 출시 경쟁으로 스마트폰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2천2백만 명, 2012년 3천2백만 명, 2013년 3천7백만 명, 2014년 4천만 명을 돌파하여 스마트폰 대중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할 수 있다.

3.1.3 스마트폰을 이용한 증거자료 수집가능성

첫째, 스마트폰은 카메라, 녹음,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범죄 현장이나 사고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고, 불법적인 대화 내용을 녹취할 수도 있다. 나아가 범행 장면을 생생하게 동영상으로 녹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은 단순한 휴대전화기능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도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SNS기능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도 있고, 경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조요청도 가능한 쌍방향소통 도구이다.

셋째, 2014년 4천만 명 이상이 거의 24시간 스마트폰을 휴대하고 다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목격된 범죄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전 국민이 범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범죄 현상이나 사고 장면 등을 촬영하여 경찰에게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3.2. 차량용 블랙박스의 활용

3.2.1 차량용 블랙박스의 개념

차량용 블랙박스(EDT Evident Data Recorder)란 교통사고 전후의 사고발생 영상, 발생위치, 속도, 가속도, 음성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주된 기능으로는 사고 상황 녹화(사고 전 10~14초, 사고 후 6~10초), 상시 녹화(12~24시간), 주차 녹화 기능 등이 있다. 원래 블랙박스라는 용어는 비행기에 장착된 블랙박스에서 유래된 용어인데, 차량용 블랙박스와 같은 카메라에 의한 영상정보, GPS에 의한 위치정보 및 속도정보, G-센서에 의한 가속도 정보 그리고 녹음기에 의한 음성정보의 기록 및 저장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한편 차량용 블랙박스 외에 디지털 운행기록계가 있는데,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차량 내부에서 추출해 내는 속도정보, 가속도정보, RPM정보, 브레이크 정보, 방향지시등 정보, 연료소모량 정보 등을 기록하는 장치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벽한 의미의 차량용 블랙박스는 영상 블랙박스 기능과 디지털운행기록계의 기능을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10].

3.2.2 차량용 블랙박스의 보급현황

산업조사 전문기관인 IRS글로벌에서는 '2014년 자동차용 블랙박스 시장전망과 사업전략 모색을 위한 종합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4만7천대 정도였던 블랙박스 보급대수가 2010년에는 38만 6천대로 늘어났다. 그리고 2012년에는 155만대, 2014년도에는 240만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누적 보급대수는 720만 2000대가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으로 추정된

다. 블랙박스 시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도 장착 의무화 움직임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미 유럽은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미국도 2011년부터 4.5톤 이하 모든 차량에 부착할 것을 지정한 바 있다. 일본은 이미 2004년 자동차용 블랙박스 도입을 실시했으며, 대형 택시업체를 중심으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도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모든 트럭, 버스, 택시에 첨단 운행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 했다[11].

3.2.3 블랙박스를 이용한 증거자료 수집가능성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자동차는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고, 최근에는 차량을 이용한 보험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차량에 의한 사고와 범죄를 예방하고, 뺑소니 사건 등 교통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영상녹화가 가능하다. 또한 차량의 운행 중에만 녹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도 24시간 녹화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관련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서 보다 선명하게 녹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블랙박스로 녹화된 영상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도 볼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는 움직이는 범죄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수요는 계속 늘어갈 것이고, 그 성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블랙박스로 촬영된 범죄증거자료를 경찰에게 제보하여, 수사자료 내지는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3. CCTV의 활용

3.3.1 CCTV의 개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

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7호). 이러한 CCTV는 현재 의료계, 교육 현장, 산업 현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범죄 예방, 교통, 방재, 기초질서 단속, 국방, 경호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CCTV는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지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범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범용 CCTV로 범죄 예방과 검거,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주로 주택가나 공원, 범죄 다발지역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12]. 둘째, 교통흐름 조사용 CCTV로서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흐름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는 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이다. 이 CCTV는 과속차량, 신호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사용되며, 범칙금부과에 따른 민원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수배차량 감지용 CCTV이다. 이 CCTV는 주행중인 자동차 번호를 자동 판독하고 수배차량번호와 비교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시스템의 일종이다. 기타 세관에서의 밀수 감시용 야간 CCTV와 총기류밀반입감시용 CCTV,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산불감시용 CCTV,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개인의 건물 및 시설 등에서 시설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등이 있다[13].

3.3.2 CCTV를 이용한 범죄증거자료 수집가능성

CCTV를 이용한 수사 자료나 증거확보는 현실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교통단속용 CCTV, 지자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쓰레기투기 단속용 CCTV, 현금인출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 편의점·은행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그리고 개인이 설치해 놓은 CCTV 등 모두가 범죄수사에 요긴하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일대에서 연쇄살인을 했던 강호순도 대로변에 설치해 놓은 CCTV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서울 강동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하였던 초등생 납치살해 사건도 현금인출기의 CCTV에 찍힌 사진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또한 최근 강서경찰서에서 건축업자를 청

부살해한 사건도 주변의 CCTV를 분석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찾아내 검거하게 된 것이다.

4.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방안

4.1. 범죄보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확보

4.1.1 보상근거의 법률, 시행령에 규정

현재 운영 중인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는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금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경찰청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 시행령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칙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의 안전 및 비밀을 보장하고 범인검거공로자 및 테러범죄 예방공로자에게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여타 시행규칙이 “~합리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범죄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나서, 그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1.2 범죄증거자료 제보시 범죄신고 보상금 지급

범죄증거자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현재의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형평성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에서는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여 상한선과 하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증거자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증거자료도 범죄해결에 결정적인 것과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2. 신고수단의 인센티브 강화

4.2.1 스마트폰에 신고 앱 설치시 통화료 지원

112신고의 경우 범죄사실만을 신고하는 것이지 범 죄증거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증거제보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는 점을 착안해보면, 스마트폰에 범죄 신고를 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목격한 범죄사실, 촬영한 영상, 녹음한 음성을 신고할 수 있게 한다면 범죄해결의 증거들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스마트폰에 평상시 범죄 신고 앱을 설치해 놓으면 위키시에 신속히 신고가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범죄 신고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화료를 할인해 주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예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2.2 블랙박스 설치시 보험료 할인을 상향

현재 블랙박스는 400만대 정도가 보급되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3~5%정도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고, 각종 교통사고의 발생시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차량 운행시에만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해 놓았을 경우에도 녹화가 되기 때문에, 범죄현장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화면을 범 죄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면 경찰의 범 죄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블랙박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여기에 녹화된 범 죄관련 증거화면을 제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찰 수만 명을 증원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할 경우 보험료 할인을 현행보다 훨씬 더 높이고, 제조회사와도 협의를 통해 블랙박스 설치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범 죄의 예방 및 검거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2.3 범 죄신고시 행정처분의 감면

범 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당근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수단이 금전일 경우에는 정부 예산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수단으로서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을 깎아 준다든지, 음주운전시 면허정지 일수를 줄여준다든지,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3. 신고의 편의성 강화

4.3.1 스마트폰으로 바로 신고 가능

국민들이 범 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보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컴퓨터에 옮겨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 접속한 다음 편집해서 올려야 한다. 그리고 위반 내용과 장소를 기입해야 하고, 신고자 신상정보를 알려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범 죄증거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범 죄관련 영상을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IT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기술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회사에서 스마트폰을 만들 때부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면 범 죄증거자료를 보다 폭넓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3.2 블랙박스 녹화내용 핸드폰으로 전송시스템

개발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도 주행 중 또는 정지 중에도 범 죄관련 증거자료를 녹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녹화된 증거자료를 경찰에게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삼육대의 학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원터치 교통위반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블랙박스에 녹화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앱을 실행하면 온라인으로 연결된

블랙박스 영상을 10~20초 분량으로 자동 편집해 운전자의 신상 및 위치 정보와 함께 경찰청 서버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앱을 이용하면 경찰의 업무량이 줄고 신고량은 크게 늘어 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3.3 CCTV 녹화내용 핸드폰으로 전송

현재까지는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핸드폰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cctv의 영상도 전송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 블랙박스로 촬영된 것, cctv에 촬영된 것을 바로 경찰청에 신고할 수 있다면 범죄검거 및 예방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날이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찾기는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는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모든 사실은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한정된 경찰력만으로 모든 범죄를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 cctv등으로 채증된 범죄증거를 손쉽게 신고해줄 수 있도록 각종 제도와 시스템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8, p. 496.
 [2] 대판 1999. 9. 3. 99 도 2317
 [3] 정병하, “수사과정의 녹음녹화자료와 증거능력”, 법조 통권 제563호, (2003.8), p. 82.
 [4] 최대호,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법정 논총 통권 제56집, (2007), p. 206.

[5] 이계경, 「국회의원 이계경 정책질의자료집2005-2」, “현행 법률상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2005.
 [6] 김강현, 「규제순응 제고 수단으로서의 신고포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p.99~101.
 [7] 조병인, “범죄신고를 제고노력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34호, 1998, p. 451.
 [8] 윤형보 외2인,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앱 이용 특성과 앱 비즈니스 모델에의 시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 2013. 3, pp.32-42.
 [9] 최원석, “스마트폰 기능적 속성의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10] 설재훈, “차량용 블랙박스의 교통사고 감소효과”, 손해보험 통권 제528호, 2012.11, pp. 2~3.
 [11] 뉴스와이어, 2013.10.28.
 [12] 류재화, “방범용 CCTV의 개념과 형태”, 수사연구, 2011.3, pp. 16~17.
 [13] 조현빈 외, “사회안전을 위한 CCTV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0. 3, pp. 264~265.

[저자 소개]



박형식 (Hyung-Sik Park)

1985년 4월 경찰대학교 행정학 학사
 2001년 2월 경희대학교 행정학 석사
 2007년 8월 광운대학교 행정학 박사
 2008년~현재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email : k62711@naver.com